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4. 9.(월) / 총 3매(본문 3)
담당 부서	물류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유인, 사무관 김민선, 주무관 장인선 • ☎ (044) 201-4018, 4019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0.(화) 08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...과로·과적·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 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우선 도입...위수탁차주 권리 강화방안도 포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.
  -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(안)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6차 국무회의(4. 10.)에서 의결됐다.
-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.
  - 부산-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,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(편도)은 75만 원이었으나,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에는 45만 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%에 불과했다.
  - 또한,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,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- 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, 과속,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,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.
-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·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,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,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.
- 다만,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-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.
-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·운송업계·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,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,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·야 합의로 극적 타결되었다고 밝혔다.
-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, 화주·운송업계·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.
- 한편,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, 안전운임과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,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·과적·과속 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”고 설명했다.
- 한편,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, 위·수탁차주(이른바 지입차주)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민선 사무관(☎ 044-201-40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